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함. (안 제12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 방 세 법

제9조 (課稅免除等を爲한 條例)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,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.

-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,
- 동 개정조례안의 준칙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(2001. 2. 5)되었기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「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」를 「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」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내용타당성에도 문제점이 없음.
- ※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도세감면조례상의 감면규모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「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」를 「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」로 개정한 바 있음.